

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11월 17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32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12. 12) 상정

○ 제132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12. 1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업지원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○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통·폐합 등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함.(안제15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없음	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0호
의결 년월일	2006.12.21 (제132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1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2006년도 각종 위원회 통·폐합 등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중소·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함.(안제15조제2항)

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(생략)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부시장,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,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